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제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임채성 의원 (서명 또는 인)

외 5명

(발의의원서명따로붙임)

의안번호	2755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임채성 의원 외 5명
발의연월일	2021. 5.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5
----------	------

발의연월일 : 2021. 5. 10.

발의의원 : 임채성, 상병현, 이윤희,
손현옥, 서금택, 이태환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 포함)과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 관내 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써 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할 구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 관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등)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시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교육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전년도에 완료된 시 관내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을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완료된 공사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임채성